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규 교육과정 이후 보호인력 배치 〉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17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2025년 늘봄학교 귀가 지원 인력 현황	8
2. 시·도교육청 제출의견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5.
3. 회부연월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돌봄 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현행	개정안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u>--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 배치</u> -----.

교육부는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한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서 “늘봄학교”를 도입하였음. 늘봄학교는 2024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고,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늘봄학교는 필요에 따라 정규수업 이전 오전늘봄(07~09시)과 정규수업 이후 오후늘봄(13~15, 15~17시), 그리고 저녁늘봄(17~20시)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참고로, 교육부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희망자의 91.4%가 13~15시, 60.3%가 15~17시 오후늘봄 참여를 희망했고, 아침늘봄의 경우 18.8%, 저녁늘봄은 11.7%가 희망한 것으로 조사됨.

그런데, 상주 인력이 많고 학생안전 보장을 위한 체계가 작동하는 정규수업시간과 달리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비교적 학생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의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늘봄학교 제도상 학생안전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귀가를 돕는 늘봄안전인력이 있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학생 보호인력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¹⁾에 따른 학생보호인력(학생안전지킴이), 제20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조의6²⁾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으며,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³⁾에 따라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명예학교안전요원의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강제력과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보호인력의 추가적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학생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돌봄교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인력 배치를 위하여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 문언상 재정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교 간의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학교의 규모와 주변 교육환경, 교육·돌봄에 대한 학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늘봄학교가 정규수업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이전에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 시 보호인력의 역할과 권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인력 배치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

4) (예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 제24조에 따른 수업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보호인력 필요성이 낮거나 보호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⁵⁾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을 위한 보호인력을 학교가 직접 모집·채용·배치하도록 하면 학교의 행정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어 현재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파견 및 매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교의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배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정규수업 중에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정규수업 종료 후에도 학교에서 추가 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지도 등이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수업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바, 개정안 심사 시 문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5) (예시) 참여 인원이 적어 담당인력만으로도 학생 보호가 가능한 경우, 활동을 학교 밖 공간에서 운영하여 학교 내 인력 배치 필요성이 적은 경우, 학교가 소외지역에 위치하여 별도 인력 모집이 어려운 경우 등

그 외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보호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 배치된 인력(교직원, 학생보호인력, 당직경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세종시교육청에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문언을 선언적 규정으로 수정하되 하위법령에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자료1] 2025년 늘봄학교 귀가 지원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귀가 지원 인력 수		
	학교 자체 채용(A)	타 기관(지자체 등) 지원(B)	합계(C=A+B)
서울	1,219	183	1,402
부산	236		236
대구	398	24	422
인천	759	155	914
광주	225		225
대전	386		386
울산	260	80	340
세종	68	1	69
경기	1,067	138	1,205
강원		316	316
충북	407	62	469
충남	215	240	455
전북	89	44	133
전남	253	37	290
경북	615		615
경남	463		463
제주	55	6	61
합계	6,715	1,286	8,001

자료: 교육부

('25.3.28. 기준)

※ 타 기관 지원(B)은 지자체 등 타 기관이 직접 채용하여 학교에 인력을 파견한 경우만을 포함한 수치이며, 타 기관이 인력 매칭 등을 지원하고 학교가 채용한 경우는 학교 자체 채용(A)에 포함

[참고자료2] 시·도교육청 제출의견

< 대구교육청 >

- 학교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보호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며,
-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기존 학교 인력(교직원,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2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당직경비원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안: 제4항 신설 >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인력을 신규 배치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기존 교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세종교육청 >

① 중학교 관련

- 중학교는 보호인력(예: 배움터지킴이 등)이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방과후 모든 활동에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중학교는 방과후 활동의 운영 빈도와 참여율이 낮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모든 활동에 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학교 실정과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낮을 수 있음
- 중학교는 학부모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인력의 참여가 적고, 외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호인력 배치에 제한이 있음. 또한 예산과 인력 상황이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호인력 운영에 있어 학교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함

< 수정안: 제3항 수정 >

-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기타

-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인력을 학교장에게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학교의 책임과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 현재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돌봄, 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떠맡고 있으며, 이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보호인력 배치는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전방위 복합서비스 기관으로 변질되는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은, 책임만을 학교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 가능해져야 함
- 보호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
- 법적으로 보호인력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교사에게 중첩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산 지원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인력의 업무 전환 또는 기존 예산의 재배분으로 이어지며 다른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
- 초·중등학교의 교육·돌봄활동에 보호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유치원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책임이 더욱 집중된 구조임. 유아의 안전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유아교육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수정안 >

- 대통령령 또는 별도 조항에 ①보호인력의 법적 지위 및 책임 주체 명시 ②교육청·지자체의 역할 명확화 ③예산 확보 및 별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보호인력 배치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